

미래에셋증권 개인형IRP 운용관리계약서

2025년 4월 1일 개정

<p>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서</p> <p>제1조 (계약의 목적)</p> <p>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p>	<p>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시어음</p> <p>2. 국제증권, 한국은행통화인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증권</p> <p>3. 지방채증권</p> <p>4. 투자적격 특수채(한국은행통화인정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p> <p>5. 투자적격 해외채권</p> <p>6.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p> <p>7.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p> <p>8.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p> <p>9. 해외 상장주식</p> <p>10.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함을 포함)</p> <p>11. 파생결합증권</p> <p>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p> <p>13. 증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탁금</p> <p>14. 운동화증권회사가 발행한 우통과 증권 중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 시설채권</p> <p>15.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입자와 회사가 합의한 운용방법</p>
---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임을 말한다.

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

다. 자연연자

라.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로.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자. '근로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차. '법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법정우체국 직원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한다.

3. "자산관리자"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한다.

4.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5. "급여이전"이라 함은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 제도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계시의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하며, 연금지급기준일은 연금지급주기(월, 분기, 연단위 등)만큼 지난 날에 해당 초일이 지급된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8. "사전지정운용제도"라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9. "사전지정운용방법"이라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10. "대기성자산(현금성자산)"이라 가입자가 제8조에 따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운용방법을 말하며, 자산관리계약의 형태에 따라 보험계약은 현금연환형,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운용관리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업무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5.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6.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내용은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제3조 (운용관리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업무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5.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6.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내용은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제3조 (운용관리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업무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5.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6.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내용은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제3조 (운용관리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업무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5.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6.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내용은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제4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일 또는 계약종료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 적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다만, 제15조에서 정한 연금지급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 연금지급기간
연금지급기준일로부터 종료일(최종 연금지급일), 계약해지일 또는 계약이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일에 연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제2조에 따른 이 제도의 설정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가입자 및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제위탁업무"라 합니다)를 제위탁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경우 및 제19조의 가입자교육 업무의 일부를 제위탁한 경우에는 제위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감독하여야 합니다.

③ 가입자는 회사가 제3조의 운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운 것
-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운 것
- 적립금 운용결과와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 적립금의 중성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 예,적금, 최저보존율을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

4.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5.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변경 승인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7조의6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① 회사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1. 승인 취소 사유

2. 승인의 가입자정보에 대한 정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 3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선정한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회사는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엄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① 가입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수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등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계약에서 "가입자정보"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입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가입자는 이 내용을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위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통지받은 가입자정보를 제위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 및 제위탁기관은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회사 및 제위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시사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조제2항에 의해 운용관리업무 일부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급여의 지급)

① 회사는 회사를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을 청구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합니다. ② 가입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55세 미만인 가입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제17조의 중도해지 규정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④ 가입자가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연금지급 신청서류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이 계약에서 "연금지급조건"이라 합니다)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연금지급기간
2. 연금지급주기(월, 분기, 반기, 연)
3. 연금지급액
4. 연금지급 신청방식
5. 자산매각순서
6. 기타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 및 자산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⑤ 연금지급액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⑥ 가입자는 잔존 연금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4항에서 정한 연금지급조건에 따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지급 위한 신탁재산 매각 중에는 조건변경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양도, 압류,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4호의2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하며, 제6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도인출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추가로 주택을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양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를 부담하는 경우.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의 배우자
3.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사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나 청결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5.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중도인출 금액은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③ 제2항의 중도인출의 경우, 회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에 따라 자산매각 수익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 (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운용지시기간"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10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① 회사는 매년 () 가입자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등 적립금 운용현황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가입자와 회사가 합의한 방법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 (부담금의 납입 등)

① 가입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일시부담금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 중 납입하는 금액
2. 개인부담금
가입자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
3. 연금지속계약 이체부담금
가입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지속계약에서 이체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가입자의 급여이전 등에 의한 적립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연금지급기준일 이후부터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운용관리수수료)

① 회사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3. 금과 이천, 계약 이천 등으로 가입자 또는 적립금이 '0'이 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제3호의 경우 가입자는 서면으로 계약 유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계약이전)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지속계약도 계약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항에서 정한 운용지시기간 내에 계약이전 신청을 위한 보수자사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지시기간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보상금을 금원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제1조(연액제)항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제위탁기관은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회사 및 제위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시사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조제2항에 의해 운용관리업무 일부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급여의 지급)

① 회사는 회사를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을 청구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합니다. ② 가입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55세 미만인 가입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제17조의 중도해지 규정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④ 가입자가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연금지급 신청서류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이 계약에서 "연금지급조건"이라 합니다)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연금지급기간
2. 연금지급주기(월, 분기, 반기, 연)
3. 연금지급액
4. 연금지급 신청방식
5. 자산매각순서
6. 기타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 및 자산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⑤ 연금지급액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⑥ 가입자는 잔존 연금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4항에서 정한 연금지급조건에 따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지급 위한 신탁재산 매각 중에는 조건변경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양도, 압류,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4호의2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하며, 제6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도인출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추가로 주택을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양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를 부담하는 경우.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의 배우자
3.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사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나 청결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5.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중도인출 금액은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③ 제2항의 중도인출의 경우, 회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에 따라 자산매각 수익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3. 금과 이천, 계약 이천 등으로 가입자 또는 적립금이 '0'이 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제3호의 경우 가입자는 서면으로 계약 유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계약이전)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지속계약도 계약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항에서 정한 운용지시기간 내에 계약이전 신청을 위한 보수자사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지시기간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보상금을 금원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제1조(연액제)항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제위탁기관은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회사 및 제위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시사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조제2항에 의해 운용관리업무 일부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9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회사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제20조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자 확인불능(인간, 객체물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怠할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전체적인, 유가증권 시장의 패쇄 등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시사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과)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는 년 월 일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이 협정서에서 "계약"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업무의 일부위탁)

회사는 계약서 제3조제2항에 의해 기록관리업무 및 운용지시전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대표자:
- 주 소:
■ 운용지시전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대표자:
- 주 소:

제24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중서·거래일 등 중요 사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명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 등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청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 때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서와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후에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청구로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언제든지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고객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캡처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7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에게 조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비밀보장)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 (관련 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신탁법, 보험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1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이들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부 칙 -2022.11.14.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2년 11월 14일 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① 2012년 10월 15일 이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장기계약유지 할인과 관련하여 2012년 10월 15일 이후 도래하는 계약유지당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변경된 계약 내용을 향 등에 대한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② 2016년 08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8조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③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시행일부터 계산하는 수수료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조 (내용대체자의 유효기간)

① 법률 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계속됩니다.
② 제1항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라면 선정한 이후부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 칙 - <2025.4.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5년 4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부속협정서

제22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과)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는 년 월 일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이 협정서에서 "계약"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업무의 일부위탁)

회사는 계약서 제3조제2항에 의해 기록관리업무 및 운용지시전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대표자:
- 주 소:
■ 운용지시전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대표자:
- 주 소:

제25조 (수수료의 종류)

회사가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계약서 제12조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됩니다.
1. 운용관리기본수수료·적립금 운용순위에 연동없이 부과되는 수수료
2. 운용순위수수료·적립금 운용순위에 연동없이 부과되는 수수료

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1. 계약 첫해에는 계약일이 계약과 연계를 자산관리신탁계약에 의해 부담금이 자산관리기관에 처음 입금된 날로부터 계약응당일 전일까지 1년간 그 다음해부터는 계약응당일부터 그 다음 계약응당일 전일까지 1년 1월 별월 적립금자산별기약에 일기중 운용관리기본수수료를 균한 일별 운용관리기본수수료의 합계를 산정하고, 매년 계약응당일 이후 적립금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5조에 의한 급여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일,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신청일, 계약서 제15조에 의한 최종연금지급의 경우에는 최종연금지급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

미래에셋증권 개인형IRP 자산관리신탁계약서

2024년 9월 9일 개정

3)2.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율을 20% 할인하여 적용합니다. 단, 전자매체(온라인입출 또는 모바일)를 통해 회사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율을 면제합니다.

가. 계약서 제11조에 따른 일시부담금 중 가입자가 부담한 금액
나. 계약서 제11조에 따른 개인부담금
다. 계약서 제11조에 따른 연금지축계좌 이체부담금 중 가입자가 부담한 금액
라. 계약서 제11조에 따른 다른 계약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 중 가입자가 부담한 금액
3)3. 제3호에도 불구하고 연금수령개시 가입자에 대해 연금수령개시된 날부터 수수료율 20% 할인하여 적용합니다.
3)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일별 수수료 계산시점의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수수료율을 면제합니다.
4. 제3호에 따른 세부업무 단위별 수수료율은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비중과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운용관리업무의 세부업무 단위와 그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단위	비중
운용방법 제시와 적립금 운용 및 관리 등	60%
운용관리업무 시스템 유지 및 개발 등	20%
운용관리업무 수행 등	20%
합계	100%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기본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연수	할인율
2~4차년도	10%
5~10차년도	12%
11차년도 이후	15%

6.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채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10/100이내의 적립금 자산을 매각하여 채득할 수 있으며, 적립금 자산 매각금액에서 운용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가 신의 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8. 제1호 내지 제6호의 적립금자산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적평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9. 회사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용관리 계약에 있는 가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가. 제3)2호 가목 내지 라목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적립금에 대하여 최초 해당액 입금일을 기준으로 1년간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나. 가목 이외의 적립금에 대해 최초 해당액 입금일을 기준으로 1년간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0. 제1호부터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 중 계약서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1년 이상 운용 중인 금액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운용손익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단, 단정형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운용손익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1. 제10호에 따른 운용손익수수료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적립금의 연평균 수익률 성과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일별 적립금자산평가금액에 아래 각 목의 운용손익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이 기준치표보다 높은 경우 :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용관리기본수수료율
나. 연평균 수익률이 기준치표와 같거나 낮은 경우 :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용관리기본수수료율 - 0.01%p
<연평균 수익률 성과에 따른 운용손익수수료를 적용 예시>

기준치표 대비 성과구간	운용손익수수료율		
	1억 미만	1억 이상 ~ 3억 미만	3억 이상
초과 성과 달성 시	0.20%	0.18%	0.15%
동일 또는 미달 시	0.19%	0.17%	0.14%

11)2. 제11호 각 목의 연평균 수익률은 수수료 징수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사전지정운용방법 적립금의 누적 수익률을 연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단,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의한 적립금 운용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최초 매수 결제일부터 수수료 징수 시점 전일까지 누적기간을 합산하여 연평균 수익률을 산정합니다.
11)3. 제11호 각 목의 연평균 수익률은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의 '적립금 운용수익 산출률'에 따라 산정합니다.
11)4. 제11호 각 목의 기준치표는 운용손익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성과 측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위험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가. 안정투자형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시: 운용손익수수료 산정 시점 직전 36개월간 회사의 안정형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월평균 공시금리 + 1.50%
나. 중립투자형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시: 운용손익수수료 산정 시점 직전 36개월간 회사의 안정형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월평균 공시금리 + 2.00%
다. 적극투자형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시: 운용손익수수료 산정 시점 직전 36개월간 회사의 안정형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월평균 공시금리 + 3.00%

11)5. 제11호의 4 각 목에 따른 기준치표 산정 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립금 운용기간이 3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초 매수결제일 이후 수수료 징수시점까지 누적기간을 반영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월평균 공시금리를 적용합니다.
12. 제11호부터 제11)5)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 적립금의 연평균 수익률 및 기준치표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13. 제10호부터 제11)5)항에 따른 운용손익수수료의 징수 대상 기간과 징수 시점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운용관리기본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② 계약에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초과 시에는

전 기간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되, 당사가 자산관리기관으로 제정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도합니다.

1. 대기성자산(연금성자산)
2. 원리금보장상품
3.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안정형 원리금보장상품
4. 원리금비보장상품
5. 실물유가증권 등
② 제1항 각 호의 유형 중 복수의 상품이 존재할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제1항 제2호의 경우 적용금리가 낮은 상품부터 매각
2. 제1항 제4호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을 우선으로 매각하며, 위험등급이 낮은 상품부터 매각
③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계약서 제15)조에 의해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가입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제5조 (가입자 교육)

① 계약서 제19)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2.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종류, 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3.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4.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연령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생활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5.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수익에 관한 사항
6.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7. 수급권의 보호 및 계약이전 절차
8. 기타 가입자가 요청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다음의 각 호 중 ()의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 합니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2. 연수, 회의, 강의 등의 집합교육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③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④ 회사는 교육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일부교육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제3)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가입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회사가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회사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일	년	월	일
가입자	생년월일		
	성 명		(인)
대리인	(가입자와의관계)		(인)
회 사	미래에셋증권 [지정명칭]		(인)
	지정장		(인)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위탁자()와(과) 이 제도의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자산관리(신탁)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에서 사용하는 용어)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말하며, 이 계약의 이익자 겸 수익자를 말합니다.
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 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
다. 자영업자
라.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마.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 30분 미만인 근로자
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차.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한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한다.
4.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의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하며, 연금지급기준일부터 연금지급주기(월, 분기, 연단위 등) 만큼 지난 날에 최초 급여이 지급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금액이전 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신탁금액)

① 가입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퇴직급여제도의 퇴직재산을 신탁합니다.
② 가입자는 퇴직재산 외에 별도로 자기의 부담으로 금전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서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신탁하는 금액의 합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한도 이외에 계약이전(가입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지축계좌에서 이 계약으로의 이체를 포함)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이 이전되는 금액을 수탁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연금지급기준일 이후부터는 추가로 신탁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신탁기간)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지일, 제19)조에 의한 신탁계약 이전일, 제21)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적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다만, 운용관리기관에 연금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계약 해지일, 신탁계약 이전일, 신탁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2. 연금지급기간 : 연금지급기준일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일, 신탁계약 이전일, 신탁계약 종료일, 또는 최종연금지급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일에 연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신탁관점)

① 이 신탁의 가입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합니다.
② 이 계약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가입자로서 합니다.
③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자산금액 및 기타 수익자에 관련된 사항은 운용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이 변경·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의한 양도, 압류,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채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를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용관리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가입자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회사는 법 제28)조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여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2)항에 의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금전 중 지 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 중인, 공공(이) 계약에서 "대기자금"이라 합니다)에 대해 발행어, RP, MMDA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함

제8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제9조 (신탁재산의 보관, 예탁)

회사는 신탁재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회사 등에 보관·예탁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신탁원본금액)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최초 신탁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추가 수탁이 있을 경우는 그 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에 가산하고 제14)조에서 정한 지급, 제17)조에서 정한 신탁의 중도해지, 제20)조에서 정한 신탁이 종료할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원본 및 이익에서 차감합니다.

제11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기합니다.

제12조 (조세 및 제비용)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자에게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제13조 (자산관리수수료)

① 회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금지급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 가입자가 전자매체(온라인입출 또는 모바일)를 통해 계좌관리점

을 다이렉트로 선택한 경우. 다만, 관리점 변경 신청으로 계좌관리점이 다이렉트로 변경된 경우 관리점 변경일 전까지 부속협정서 제2)조에 따라 발생한 자산관리수수료는 징수합니다.

2. 가입자가 전자매체(온라인입출 또는 모바일)만을 통해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하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

제14조 (신탁금의 지급)

① 회사는 가입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입자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지연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는 등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경우라도 회사는 이를 이행합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일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일일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일일의 기한이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

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 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 "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등 회사사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가입자, 운용관리기관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양도, 압류,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하거나 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우라도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중도해지)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3. 계약 이전, 계약 이전 등으로 가입자 또는 적립금이 '0'이 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제3)호의 경우 사용자는 서면으로 계약 유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수탁자(회사의 사임)

① 회사는 수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가입자의 승낙 없이 임무를 사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사할하는 경우 가입자는 새로운 회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가 새로운 회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운 회사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제19조 (계약이전)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지축계좌로 계약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이전의 경우 회사는 신탁사유를 정리하고 신탁재산을 계약이전 받는 수탁기관에게 과부하고 사무인계 합니다.

④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3)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적립금의 매각 소요 기간은 지급일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제4)항의 지급일 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일일에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에 제6)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제5)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 시 지급액"에 지급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 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제20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금지급을 위하여 청산사무가 필요한 경우 신탁금 지급일은 청산종료일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제21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무)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선관주의무)

회사는 선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환인수단(인강,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환인수단과 육안으로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6.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수행을 거부한 경우
7.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주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부 칙 <2022.6.13. 개정> -

① 2012년 10월 15일 이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 자산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장기계약유지 할인과 관련하여 2012년 10월 15일 이후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변경된 계약 내용을 적용합니다.
②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시행일부터 계산하는 수수료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부 칙 <2024.9.9. 개정> -

제24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인감신고)

① 가입자는 가입자의 인감을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중서·거래인장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7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통지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고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공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캡처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과의 약속을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9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고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관련 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신탁법,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2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이음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3조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과)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는 년 월 일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자산관리(신탁) 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3)조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첫에는 계약일(이 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회사에 처음으로 금전을 신탁한 날)로부터 계약응당일 전일까지 1년간, 그 다음해부터는 계약응당일부터 그 다음 계약응당일 전일까지 1년간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에 일기준 자산관리수수료율을 곱한 일별 자산관리수수료의 합계를 산정하고, 매년 계약응당일 이후 신탁재산에서 채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신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신탁금 지급신청일,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최종연금지급의 경우에는 최종연금지급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 사유 발생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신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신탁금 지급신청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약 경과연수	할인율
2~4차년도	10%
5~10차년도	12%
11차년도 이후	15%

6.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10/100이내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 매각금액이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자산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8. 제1호 내지 제6호의 신탁재산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해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계약일	년	월	일
가입자	생년월일		
	성명	(인)	
대리인	(가입자와의 관계)		(인)
회사	미래에셋증권 [지점명판]		
	지점장	(인)	

■ IRP 가입자격 확인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 (DB/DC) 가입자
	<input type="checkbox"/> 미래에셋증권가입자
	<input type="checkbox"/> 타사가입자
	<input type="checkbox"/> 퇴직금제도재직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년미만재직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단기간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input type="checkbox"/> 경찰
	<input type="checkbox"/> 군인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교직원
	<input type="checkbox"/> 별정우체국직원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일반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카드설계사, 보험설계사 등
	<input type="checkbox"/> 농림축산어업종사자
<input type="checkbox"/> 퇴직급여일시금수령자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	
<input type="checkbox"/> 타사->당사IRP계약이전	

* 해당하는 IRP 가입자격을 V 체크 바랍니다